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재활용하여야”를 “재활용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른 제품별”을 “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제품군별”로 한다. 별표 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<p>1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</p>	<p>가. 1회용 컵(종이컵,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) 나. 1회용 접시(종이접시, 합성수지접시 및 금속박접시 등) 다. 1회용 용기(종이용기, 합성수지용기 및 금속박용기 등) 라. 1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마. 1회용 수저, 포크 및 나이프 바. 1회용 비닐식탁보</p>	<p>사용억제</p>
---	--	-------------

	사.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	
	아.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	제작·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
	<p>자.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[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“표준산업분류”라 한다)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한다]. 다만,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.</p> <p>1)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</p> <p>2)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</p>	무상제공금지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한다.
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	1회용 합성수지용기. 다만,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.	사용억제
3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	<p>가. 1회용 면도기</p> <p>나. 1회용 칫솔 및 치약</p> <p>다. 1회용 샴푸 및 린스</p>	무상제공금지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	가. 1회용 봉투 및 쇼핑백. 다만,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.	사용억제

	<p>다.</p> <p>1)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</p> <p>2) 생선, 정육,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</p> <p>나. 1회용 우산 비닐</p>	
	다.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	제작·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
5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	1회용 응원용품	무상제공금지. 다만,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다.
6.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	<p>가. 1회용 봉투 및 쇼핑백. 다만,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.</p> <p>1)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</p> <p>2) 생선, 정육,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</p>	무상제공금지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 소매업은 사용억제 한다.
	나.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	제작·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
7.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, 보험 및 연금업, 증권 및 선물	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	제작·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

중개업,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, 광고 대행업,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, 영화관 운영업, 공연시설 운영업		
--	--	--

별표 2 비고 제2호 중 “슈퍼마켓”을 “종합 소매업”으로, “할인하여”를 “할인해”로,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, “알기 쉽게 하여야”를 “알기 쉽게 해야”로 한다.

별표 6의 제목 중 “(제13조 관련)”을 “(제13조의2 관련)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,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. 발광다이오드(LED) 조명: 발광다이오드칩, 칩 장착용 보드 및 기타 부분품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
 - 가. 유가금속(有價金屬) 등의 회수
 - 나. 압축, 파쇄 등 가공을 통한 재생원료의 제조
 - 다.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하고,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플라스틱 제품·재료·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·재활용 방법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<u>재활용하여야</u> 한다. 이 경우 재활용은 회수·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.</p> <p>1. 전자제품: 「<u>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 제4조에 따른 <u>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</u>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제8조(플라스틱 제품·재료·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·재활용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재활용해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「<u>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</u>」 제5조에 따른 <u>제품군별</u> 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